

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1-73호(2011.12.07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, 강동구 고시 제2014-73호(2014.10.2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강동구 고시 제2016-128호(2016.08.31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, 강동구 고시 제2019-49호(2019.04.17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 고덕주공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□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번지 일원
 - 나. 면적 : 246,205.5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명 :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변우택)
 - 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3길 26, 3층 3·4호(명일동, 고덕복합빌딩)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. 4. 13.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 - 가. 주요내용
 - 확정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조합원별 대지지분 확정
 - 정비사업비 변경 및 상가 일반분양 완료에 따른 상가 및 교회 각 구역별 비례율 변경

나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동수	층 수 (높이)	세대수	건폐율 (%)	용적률 (%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용도
207,860.3	53	지하3층 ~ 지상 35층	4,932	20.68	249.84	42,982.65	839,026.85	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▷ 공동주택

분양대상			조합원분양	일반분양	소형주택	보류지	비 고
전용면적	세대수						
59.785	1,402	1,964	996	828	140	－	
59.508	61						
59.028	324						
59.052	177						
73.873	513	762	445	317	－	－	
73.566	249						
84.244	955	1,836	1,098	738	－	－	
84.300	49						
84.046	381						
84.240	451						
97.801	112	224	144	80	－	－	
97.784	112						
113.227	33	99	57	42	－	－	
113.192	33						
113.398	33						
127.765	33		15	18	－	－	
133.152	6	9	9	－	－	－	
133.013	3						
143.260	1		1	－	－	－	
175.114	1	4	4	－	－	－	
175.904	1						
175.299	2						
합계	4,932		2,769	2,023	140	－	

▷ 분양용지

구분	규모(㎡)	소유자	용도	필지수	무상양여(㎡)	비고
1	196,865.54	시행자	공동주택	2	-	
2	4,614.26	시행자	재건축소형주택	-	-	
3	6,014.66	시행자	상가	-	-	
4	365.84	시행자	교회	-	-	

라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

신설			폐지			
종류	규모(㎡)	관리청	종류	필지수	국공유지(㎡)	무상양여(㎡)
도로	15,505.8	서울시	공원 (어린이공원)	1	-	1,967.5
도로	8,612.9	강동구	-	-	-	-
공원	14,226.5	강동구	-	-	-	-

마. 기타 세부 변경내용은 관리처분변경계획 관계도서에 따름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(☎02-3425-5982) 및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(☎02-441-7527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4월 16일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개정이유

강동구와 국내·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교류사업의 추진을 통해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를
「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」로
제명 변경
- 나.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다.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1조)
- 라. 기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(참조 : 총무과 ☎ 02-3425-5102, 팩스 02-3425-721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기타사항

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(단체)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총무과(☎ 02-3425-5102, 팩스 02-3425-72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 명 :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 출 자 : 강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강동구와 국내·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교류사업의 추진을 통해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를
「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
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
- 나.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다.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1조)
- 라. 기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지방자치법 제39조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

나. 예산조치: 2020년 예산반영

다. 기 타

- 1) 전문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- 2) 입법예고: 2020. 04. 16. ~ 05. 06.(20일간)
- 3) 규제심사: 원안가결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가결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가결
- 6) 아동영향평가 결과: 개선권고 반영(안 제11조)

[당초] 1. 청소년 교류사업 ⇒ [반영] 1.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

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
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매결연”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(이하 “국내외 도시”라 한다)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, 경제, 문화,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.
2. “자매도시”란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.

3. “우호교류”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,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.

4. “우호도시”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서울특별시 강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(이하 “자매결연 등”이라 한다)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자매결연 등 대상) 구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.

제5조(자매결연 등 제의)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면적, 인구 및 행정,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
2. 산업,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
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
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
6.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

제6조(사전교류)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.

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.

제7조(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)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,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8조(자매결연 등 체결)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장(이하 “장”이라 한다)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,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한다.

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.

제9조(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등) ①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(이하 “소속기관”이라 한다)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때에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(이하 “자매도시 등”이라 한다)의 소속기관과 우선 추진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소속기관이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, 교통편의,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사후관리)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
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, 협정서, 조인서,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 등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
2. 문화·예술·관광·스포츠 교류사업
3.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·기업 교류사업
4. 봉사·복지·보건·의료·교육 분야의 교류사업
5.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
6. 재난·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·구호 물품의 지원
7. 그 밖에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자매도시 등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

③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, 사회단체, 기업이 국내외 자매도시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,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.

제12조 (자매결연 등 파기) 구청장은 자매도시 등과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.

1.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
2.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
3.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
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